

충청북도 도민교육원 조례 중 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4년 5월 12일

나. 회부일자 : 1994년 5월 12일

3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도민교육원이 「청원군 가덕면 시동리」에서 「청원군 가덕면 한계리 산25」로 신축 이전함에 따라 불부합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- 제2조(위치)중 「시동리」를 「한계리 산25」로 한다.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도민교육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,

이는 도민교육원을 신축 이전함에 따라 행정구역상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현행조례 제2조 위치 조문중 청원군 가덕면 시동리를 청원군 가덕면 한계리 산25로 불부합한 조례조문의 자구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

본 개정조례안은 승인하여 준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6. 첨 부

충청북도 도민교육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